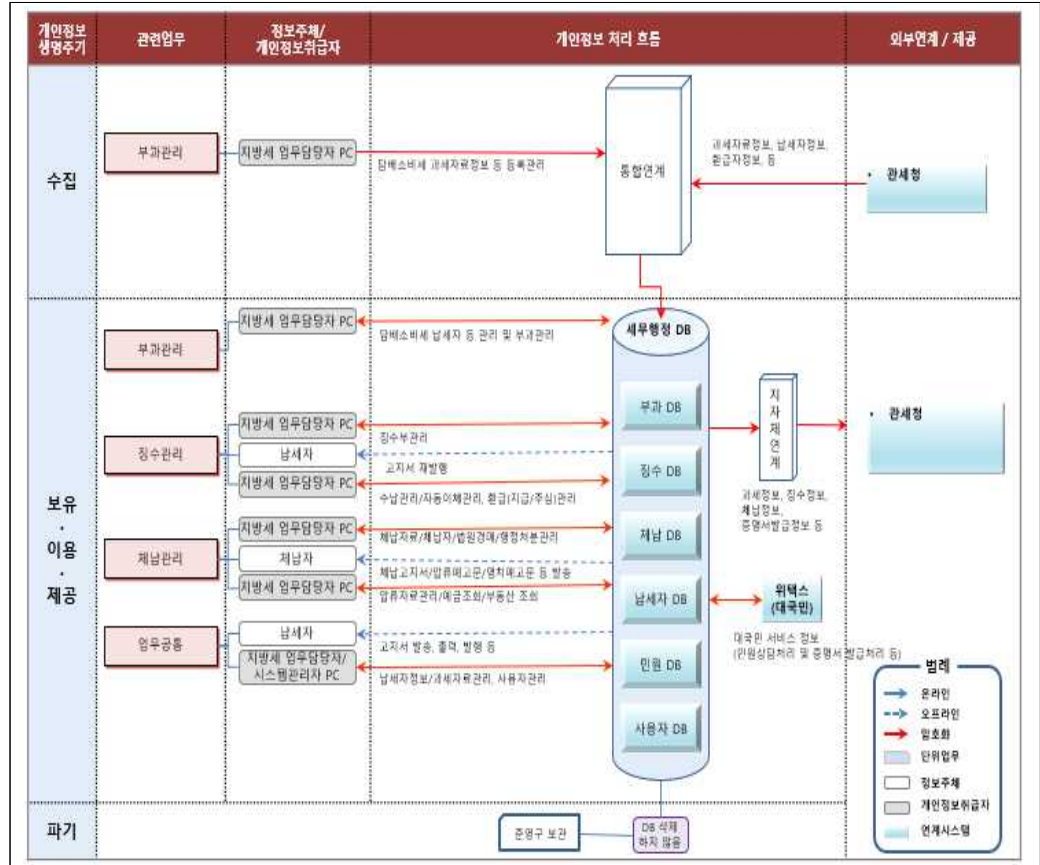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공기관 명		광주광역시				
평가기관		(주)씨에이에스	평가 기간	2026.05.04 ~ 2026.05.29	평가 예산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평가 대상 시스 템 개 요	시스템명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	2026. 1. ~ 2026. 12
	추진개요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채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				
	추진성격	대상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		추진예산	102,650,562천원 (VAT 별도)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업무의 정보화)		추진유형	☐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
		신기술 유형				
	주요내용	-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				
	운용체계 변경내용	해당하지 않음				
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지방세) 담배소비 세관리	45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E-Mail		관세청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광주광역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담배소비세 정보를 관세청으로부터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 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 하지 않음.				

- 광주광역시는 하급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이관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 향 평 가 기 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 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은 2025년 6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평가한 항목으로 평가에서 제외함(4개 평가분야 10개 항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3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6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 『지방세법』 제49조, 제130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2.3.2) : 담배소비세 개인정보를 관세청 제공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 -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하는 내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추가 공개 (3.1.9)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개인정보 보유기간 재설정 (3.2.1) :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준영구'로 정의 - 개인정보처리 재위탁업체 공개 (3.4.1) : 개인정보처리를 재위탁한 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개인정보파일 파기 (3.5.3) : 불필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취소 처리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해당없음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4개 평가분야 10개 항목은 2025년 6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평가한 항목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 항목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을 부분 이행 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6개 항목을 제외하고 7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4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19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4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